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312
----------	------

제안년월일 : 2024년 12월 17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윤영희 의원 외 4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51호), 최민규 의원 외 3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81호), 김경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2024.12.17.)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윤영희 의원 외 43명, 최민규 의원 외 32명, 김경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를 의무화하고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등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동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 교육을 실시
토록 명시함(안 제9조)
- 나. 주·정차 위반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4조 신설)
- 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안전사고 예방”을 “안전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로 한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주·정차 위반에 관한 사항) 시장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교통위원회 대안
<p>제9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u>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u></p> <p>5. ~ 7. (생략)</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4조 (생략)</p>	<p>제9조(안전교육 등) ① ----- ----- ----- ---- <u>실시해야</u>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안전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u>----- -----</p> <p>5. ~ 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u>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u></p> <p>제15조(주·정차 위반에 관한 사항) 시장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16조 (현행 제14조와 같음)</p>